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08
----------	------

2025년 4월 2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2월 3일, 문성호 의원 외 22명

나. 회부일자: 2024년 2월 7일

다. 상정일자: 제33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4월 22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문성호 의원)

가. 제안이유

- 과리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의 일환인 1회용품 줄이기 조례와 함께 효율적인 사용 줄이기 캠페인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청소년시설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미래 환경을 위한 교육적 의미를 찾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각 항목에 다회용품 사용 권장 및 활성화 사항 추가(안 제3조제1항~제3항, 제6조제2항).
- 청소년시설 사항 추가(안 제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공공기관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확대하며,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도 1회용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환경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추가하는 것으로 다회용품 사용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에 대해 이견은 없음.

다만, 다회용품 사용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 하나이며, 이외에도 개인용품 사용(텀블러, 에코백, 다회용기, 숟가락·젓가락, 손수건 등) 역시 수단이 될 수 있는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 다회용품 사용만을 별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형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제3항은 1회용품 판매금지 시설에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 및 체육시설 외에 청소년시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1회용품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고 환경 교육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장례식장은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체육시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제공·판매금지와 1회용품 사용 억제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소년시설은 상위법이나 지침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1회용품 배출량 또한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청소년시설의 1회용품 판매금지에 대해서는 1회용품 배출 실태 파악 및 실효성 검토 후에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1회용품 줄이기 대상 시설 관련 규정 및 통계〉

시설명		내용
장례식장	규정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3조(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② 공공기관이 장례식장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제공·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계	• 전국 장례식장 1회용 폐기물 발생량 2,300톤/년(전체 1회용 폐기물 중 20%) (2020, 환경부)
체육시설	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통계	• 서울 시내 7개 주요 체육시설 폐기물 배출량 약 2,096톤(2022, 서울시)
청소년시설	규정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통계	• 자료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다회용품 사용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 하나이므로, 시장의 책무 등에 목적과 수단을 동일한 위상으로 나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도록 함.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08
----------	------------

제안년월일: 2025년 4월 22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다회용품 사용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 하나이므로, 시장의 책무 등에 목적과 수단을 동일한 위상으로 나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시장의 책무 등에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제3항, 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를 “줄이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줄이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저감하고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을 “저감”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않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u>줄이기</u>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 ----- <u>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u>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 및 시민은 시장의 1회용품 사용 <u>줄이기</u>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 ----- <u>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u>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u>저감</u>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 ----- <u>저감하고 다회품을 적극 사용</u>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생략)	제6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제6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에게 1회품을 사용하지 <u>않도록</u> 권고할 수 있다.	② ----- ----- <u>않고 다회품을 사용하도록</u> -----.	②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수정안과 같음)
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u>체육시설</u> 등에서는 1회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품을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 ----- <u>체육시설, 청소년시설</u> -----.	③ (수정안과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체육시설”을 “체육시설, 청소년시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 ② (생략)	제6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u>체육시설</u>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 ----- <u>체육시설, 청소년시설</u> -----, ----- -----.
④ ~ ⑥ (생략)	④ ~ ⑥ (생략)